

건설기술진흥법(시행2019. 7. 1.) 주요 개정사항

☞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의무 및 위반 시 벌칙부여 (제24조3호의2, 제39조제4항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▶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주체가 건설기술용역업자(업체)로 규정되어 있음	▶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주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(개인)으로 규정 ▶ 보고서 미작성 및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병행부과	* 2년 이내 업무정지(행정처분) 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형사처벌)

☞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·이행(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인원(감리)을 배치하도록 의무화) (제39조의2, 제91조제1항 신설)
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신설>	▶ 발주청이 사업관리방식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·제출·이행토록 의무화	* 규정을 위반하는 발주청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<신설>

☞ 실정보고 절차 및 제재 마련(제39조의3 신설, 제89조)
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신설>	▶ 실정보고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·발주청의 절차 마련 ▶ 건설업자의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한 감리자와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한 발주청에 대한 제재	* 1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<신설>

☞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(안제85조제1항)
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▶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구조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	▶ 건설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구조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	*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☞공사중지 명령 정상화, 제재강화(제40조, 제87조의2 신설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▶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재시공·공사중지 명령할 수있음	▶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에 맞지않게 시공하거나, 안전·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·공사중지 명령 가능	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<신설>	▶재시공·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시정여부의 확인 및 공사재개 지시를 공사중지 명령권자(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)가 하고, 조치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	

☞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, 손해 면책 (제40조의2, 제40조의3 신설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신설>	▶누구든지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금지	*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<신설>
<신설>	▶재시공·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명령이 정당한 경우 손해에 대해 면책	

☞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(제50조 개정, 제91조 신설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▶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	▶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▶발주청의 의무 사항인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	*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신설>

☞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(제62조, 제89조, 제91조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기 미규정 ▶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권자이며,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을 인허가기관에는 제출토록만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출 및 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▶ 계획서를 제출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검토 결과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에게 통보 ▶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건설업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<신설> *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건설업자가 착공 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<신설>

☞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국토부 제출 의무화 (제62조, 제91조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(제출의무 없음) ▶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, 안전점검 시기 .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부에 제출<신설> ▶ 건설업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하고, 점검 후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

☞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(제67조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사실을 국토부에 제출 ▶ 중대건설사고: 3명 이상 사망, 10명 이상 부상,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건설사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사실을 국토부에 제출 ▶ 건설사고: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,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

☞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수행한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자 벌칙 부여 (제39조제6항 및 제88조제1호의4 신설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①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, ②품질시험 및 검사 시행 여부의 확인, ③건설자재·부재의 적합성 확인 ▶ 고의로 상기 주요업무를 게을리하여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자에게 형사처벌 부과 	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☞ 설계의안전성검토(Design for Safety, Dfs) 의무화 (제62조, 제91조)		
현 행	개 정 안	처분사항
<신설>	▶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	* 제91조(과태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발주청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○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발주청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